

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9.12.30.

개정 : 2021.02.05.

개정 : 2023.08.04.

담당: 교학팀(02-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구분)	제3조(정의)	제4조(자격)
제5조(임용)	제6조(임용기간)	제7조(결격사유)	제8조(채용분야 및 인원)
제9조(채용방법 및 절차)	제10조(심사위원회 구성)	제11조(심사방법 및 절차)	제12조(명예교수 추대 절차)
제13조(재임용)	제14조(임용취소)	제15조(당연퇴직)	제16조(휴직)
제17조(면직사유 등)	제18조(의사에 반한 면직 등의 금지)		제19조(강의시간)
제20조(임무 및 복무)	제21조(보수)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」 제43조 제7항 및 「한국성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」 제2조 제2항에서 위임한 비전임교원의 임용·복무 및 처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, 겸임교수, 초빙교원(석좌교수·특임교수·대우교수·산학협력중점교수)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정의) ① 명예교수는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교수로 재직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 타의 모범이 되어 명예직으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.

② 겸임교수는 산업체, 연구기관, 국가기관, 공공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순수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③ 초빙교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및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 및 연구,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초빙된 교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석좌교수는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 중,

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업체·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2. 특임교수는 국내외 대학·연구기관·정부·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수한 전문영역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쌓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로서 본교에서 교육 및 연구 또는 학교 정책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3. 대우교수는 타 대학의 전임교원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으로 학문적 업적을 쌓아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4.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④ 석좌교수, 특임교수, 대우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외적으로 “초빙교수”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자격) ① 명예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재직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매우 뛰어나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.

1. 본교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자

2. KCI급 연구업적이 2,000점 이상인 자

②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 한다.

1. 연구·교육경력 연수 4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2.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본직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

3. 본직기관에서 총 경력(본직기관 소속 전 유사 분야 근무경력 포함) 3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본직기관장의 겸직 동의를 받은 자

③ 초빙교원은 연구·교육경력 연수 4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 한다.

④ 초빙교원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. 산업체 경력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민간산업체, 정부·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.

제5조(임용)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②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심사위원회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별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종신으로 한다.

제7조(결격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② 재직 중인 비전임교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.

제8조(채용분야 및 인원) 교학처장은 각 학과, 대학원에서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제9조(채용방법 및 절차) ①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교 정책에 따라 초빙교원 총원이 필요할 경우 학문적 능력과 업적이 뛰어나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.(개정23.08.04.)

② 공개채용은 채용분야 및 인원,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최소 5일 이상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심사위원회 구성)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각 학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1.02.05.)

1. 서류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교학처장과 해당 학과장을 포함한 전임교원으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

2. 면접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교목실장과 총장이 추천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목실장으로 한다.

제11조(심사방법 및 절차)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종합하여 심사한다.

1. 겸임교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다.

- 가. 초빙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
- 나. 초빙 분야에 적합한 교육·연구 경력
- 다. 교육자로서의 인성 및 자질

2.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다.

- 가. 초빙 분야에 적합한 교육·연구·실무 경력
- 나. 교육자로서의 인성 및 자질
- 다. 본교에 대한 기여 가능성

② 서류심사위원회는 초빙 분야별 심사평가표를 종합하여 전체 심사위원 평가의 합을 산술평균(소수 3 자리에서 반올림)하여 점수 산출 후 상위득점자 순으로 2배수 내외로 선발하여 면접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. 다만, 산술평균점수가 300점 만점에 21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면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접 심사한다. 다만 본교 출강을 위한 면담을 필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1. 본교 건학이념과의 부합

2. 담당과목의 적합성

- ④ 공개채용 면접심사위원회는 면접에서 “적합”을 판정 받은 자 중에서 서류심사 상위득점자 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-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. 다만, 책임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1조의2(특별채용 심사방법)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초빙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진행한다.

1. 해당 학과의 추천을 받아 교목실장의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
 2.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과 추천 및 면접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.
- [본조신설23.08.04.]

제12조(명예교수 추대 절차) ①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한다.

1. 소속 학과장의 추천
 2. 교원인사위원회 심사 및 추천
 3. 총장 추대
- ② 명예교수를 추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1. 명예교수 추천 대상자의 이력서
 2. 소속 학과장의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
 3. 신앙에 대한 공적서
 4.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공적서
 5.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
 6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- ③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제5호 서식에 의거 심사한다.

제13조(재임용) ① 비전임교원은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인력 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② 비전임교원은 기말수업평가(대학원 포함) 결과 4.0 미만 또는 수업일수 미준수 시 재임용하지 않는다. (개정21.02.05.)
- ③ 재임용 심사를 위해 교학처장과 해당 학과장을 포함한 전임교원으로 3인 이상 각 학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(개정21.02.05.)
- ④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·강의 및 학생 지도 능력·분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종합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-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된 비전임교원을 심의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

제14조(임용취소) 비전임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.

제15조(당연퇴직)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1.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
2.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. 다만, 이 경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아니한다.
3.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인력 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6조(휴직)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.

제17조(면직사유 등) ①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
1.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2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3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4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할 때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.

1. 수시 및 정기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
2.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입교원을 채용한 때
3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4. 소속 학과의 폐지

③ 겸임교수가 임용기간 중이라도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.

제18조(의사에 반한 면직 등의 금지)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·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또는 「사립학교법」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강의시간)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0조(임무 및 복무)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교육 및 연구 등을 담당한다.

-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일정한 수준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본교의 규정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보수)** ①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강의료 산정기준 등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.
- ② 비전임교원은 계약으로 정한 보수 이외에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과제 수행으로 필요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비전임교원 중 보수가 연봉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2. (폐지되는 규정) 이 규정 시행과 함께 「명예교수에 관한 규정」, 「초빙교수에 관한 규정」 「객원교수에 관한 규정」, 「겸임교수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3. (경과조치)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존 초빙교수 및 겸임교수는 위촉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겸임교수 공개채용 서류심사 평가표

접수번호		채용학과	
채용분야		성명	
평가기준점수	"우수" 80점 이상, "보통" 80점 미만~70점 이상, "미흡" 70점 미만~40점 이상		

평가항목	배점	점수
1. 채용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가? ↳ 경력증명서를 참고하여 평가	100점	
2. 채용 분야에 적합한 교육·연구 경력이 있는가? ↳ 저서 및 논문(KCI급, SCI급) 실적을 참고하여 평가	100점	
3. 교육자로서의 인성 및 자질 ↳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교육자로서의 품격, 성격, 인화력 등의 인성 및 기본자질 평가	100점	

심사일		소속		심사위원	(인)
-----	--	----	--	------	-----

(별지 제2호 서식)

초빙교원 공개채용 서류심사 평가표

접수번호		교원구분	
채용학과		채용분야	
성명		평가 기준점수	"우수" 80점 이상, "보통" 80점 미만~70점 이상, "미흡" 70점 미만~40점 이상

평가항목	배점	점수
1. 채용 분야에 적합한 교육·연구·실무 경력이 있는가? ↳ 경력증명서를 참고하여 평가	100점	
2. 교육자로서의 인성 및 자질이 있는가? ↳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교육자로서의 품격, 성격, 인화력 등의 인성 및 기본자질 평가	100점	
3. 본교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는가? ↳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, 연구, 취업 지원 활동 등의 기여 가능성을 평가	100점	

심사일		소속		심사위원	(인)
-----	--	----	--	------	-----

(별지 제3호 서식)

비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심사 평가표

(겸임교수, 초빙교원)

접수번호		교원구분	
채용학과		채용분야	
성명			

1. 기본사항

출석교회			
교단		직분	
면접심사 생략 대상 여부	(○ , ×) 본교 출강을 위한 면담을 필한 자		

2. 면담내용

< 본교 건학이념과의 부합 및 담당과목의 적합성 >

3. 적합성 유무

적합	부적합 (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)

심사일		소속		성명		(인)
-----	--	----	--	----	--	-----

(별지 제4호 서식)

비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종합 평가표

(겸임교수, 초빙교원)

교원구분		소속학과	
성명		생년월일	
임용기간			

1. 임용기간 실적에 대한 평가

<p>■ 연구실적</p> <p>■ 강의 및 학생 지도 능력</p> <p>■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</p>	
---	--

2. 추천 유무

추천	비추천 (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)

년 월 일

심사위원			
소속	성명	소속	성명
	(인)		(인)
	(인)		(인)

(별지 제5호 서식)

명예교수 추대 심사 평가표

심사 대상자	성명		소속	
	최초임용일		정년퇴직일	

평가항목		배점한도	평가점수	평가 의견 및 기준
정성	1. 신앙	20		
	2. 근속연수	20		•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마다 2점씩 가점
정량	3. 연구업적	30		• 총 연구업적 점수 ÷ 2,000점
	4. 교내봉사	30		• 7점 : 부총장, 부장, 대학원장, 처·실장 • 5점 : 학과장, 도서관장, 일립생활관장 • 3점 : 대학원주임교수, 센터장, 일립교육부과장 ※ 보직별로 배점하되 동일보직은 2년 단위로 인정하고 겸직시 상위보직을 인정함
평가점수 총합		100		※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추대 가능함
<총평>				
심사일		소속		심사위원 (인)